

# 光州廣域市西區財政運營狀況의 公開條例案

## 審 查 報 告

1996年 9月

企劃總務委員會

### 1. 審査經過

가. 提出日字 : 1996年 8月30日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提出  
및 提出者

나. 回附日字 : 1996年 9月 4日

다. 上程日字 : 第58回 西區議會(臨時會) 會期中  
第1次 企劃總務委員會(1996年 9月 12日 上程議決)

###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企劃監查室長 丁 浩 文)

#### 가. 提案 事由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規定에 의거

- 지방자치단체장은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현황, 재산 및 중요물품의 증감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나. 主要骨子

○ 제2조(주민공개회수) → 재정운영 사항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

- 제3조(주민공개대상) →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1항, 2항으로 구분하여 공개 대상을 명문화
- 제5조(주민공개제한) →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등 기밀에 속하는 예산운영 상황은 공개 제한
- 제7조(시행규칙) → 재정운영상황 공개에 따른 방법 등 본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제정

###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朴 鍾 根)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현황을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 취약한 재정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며,
- 이제 우리 서구는 상무 신도심과 지하철 1호선 건설, 풍암택지 개발, 제2순환도로 등 굵직한 사업의 중심에 놓여 있어 21세기 국제도시 빛고을의 발전핵으로 내일을 향한 발전 가능성이 어느 지자체보다 크다고 하겠으며,
- 이러한 재정운영상황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공개토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 략

5. 討論 要旨 : 생 략

6. 審査 結果 : 수정안 가결

7. 少數 意見 要旨 : 없 음

8. 其他 事項 : 없 음

##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1996. 9. .

발의자 박종옥 의원외 6인

### 1. 수정사유

-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현황, 재산 및 중요물품의 증감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지방 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의결코자 함.

### 2. 주요골자

- 제3조 제2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된 사항만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 3. 기타 참고사항

##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대한수정안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2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된 사항만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3조(주민공개대상) ① 생략</p> <p>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u>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1. - 6. (생략)</p>	<p>제3조(주민공개대상)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p> <p>----- <u>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된 사항만을 공개하여야 한다.</u></p> <p>1. - 6. (제정안과 같음)</p>

광주광역시시서구조례 제 호

### 광주광역시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규정에 의한 구의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 3 조 (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7.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 4 조 (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  
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  
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주민공개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 6 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구청장의 결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구청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7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